

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 검토의견

개 정 안	수정안	사 유
부칙 제2조(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	부칙 제2조(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<u>다만, 이 영 시행 이전에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참여자 선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u>	○ 개정안에 따르면,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을 전국에 보급되는 일간신문 등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(제18조의2 제2항), 그와 같은 절차는 개정된 시행령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(부칙 제2조). ○ 그런데,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전에 ①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·지방공사 등의 공모에서 민간컨소시엄간 경쟁을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후, ② 민간사업자와 공모 공고의 내용을 반영하여 협약을 체결하고,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법인설립까지 마친 경우가 많습니다. ○ 그렇다면, 시행령 시행 이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, ‘시행령 시행 이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’을 기준으로 개정안 제18조의2를 적용한다면 그 시행 이전에 공모 및 민간참여자 선정을 완료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,

개 정 안	수정안	사 유
		○ 그 공모 및 민간참여자 선정의 적법·유효성이 인정되는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, 나아가 이미 민간참여자 선정을 마쳤음에도 공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고 해석될 경우 법령의 소급적용에 따른 법적 안정성 저해의 우려가 있습니다. ○ 따라서, 개정안 시행 이전에 그 절차가 완료된 공모 및 민간참여자 선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개정안 제18조의2 제2항은 부칙 규정을 통하여 그 적용 범위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.

○○부 ○○과 ○○○ 사무관(☎000-000-0000)